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1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5. 10. 허옥희 의원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5. 1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6. 02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고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“법무사, 행정사” 를 추가함.
(안 제9조제4항제3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19호
- 예고기간: 2023. 5. 12.(금) ~ 2023. 5. 17.(수) 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조례 개정의 취지(필요성)
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위탁 관련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“행정사”와 “법무사”를 추가(안 제9조 제4항제3호)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어 수탁기관 심사·선정에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6. 2. 원안가결

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21호)

심 사 보 고 서